

보도자료

2010년 12월 2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			
가. 정책총괄과	전성배과장(2110)	나. 시청자권익증진과	양한열과장(2690)
다. 이용자보호과	이재범과장(2670)		
[보고안건]			
가. 방송정책기획과	이상학과장(2410)	나.,다. 편성평가정책과	권병욱과장(2350).

2010년 제7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건 (첨부1 참조)

-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이 제정('10.3.22 공포, '10.9.23 시행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- 주요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,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, 방송통신 표준화,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등

나.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년 11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(9인)을 위촉함

구 분	성 명	성 별	전·현 직
위원장	형태근	남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
방송 등 언론 분야	김운영	남	전 원주MBC 사장
	이진희	남	스포츠한국 부사장
교육, 문화계	구종상	남	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교수
	정기현	여	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
	김은미	여	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
법조계	방희선	남	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시청자 단체	강혜란	여	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
기타 전문가	윤장신	남	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

나. 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2 참조)

- 방송법상에 제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,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및 척도를 도입하기 위해 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다. 『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』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3 참조)

- 방송법시행령 개정(10.10.1)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연장하고,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『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』 를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 주요내용

1.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사항

- 방송통신콘텐츠의 구체적 범위는 방통위 소관 법령의 범위내로 하되, 그 구체적 사항은 양 기관이 구성·운영하는 “방송통신콘텐츠협의체”에서 정하도록 규정

2.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

- **(기금운용심의회)** 심의회 위원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, 심의회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(안 제15조)
- **(방송사 분담금)**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·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
- **(분담금 경감)**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% 이상인 경우 50%,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% 이상인 경우 30% 경감(안 제13조제2항)
 - ※ 자본잠식 100% 이상은 강원방송 등 2개 사업자로 50% 경감시 1억원 경감
 - ※ 자본잠식 50% 이상은 경인방송 등 19개 사업자로 30% 경감시 23억원 경감
- **(지상파방송사 분담금 징수)** ‘11년부터 분담금 징수체계를 KOBACO 원천징수에서 KORPA에 위탁하여 사후 징수방식으로 변경
 - ‘13년까지는 당해연도 분기말에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부과·징수, ‘14년부터는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다음연도에 부과(부칙 제2조)
 - ※ 분담금 징수방법 변경에 따라 “11년도 분담금의 25% 징수 유예(4분기 분담금 납부가 ’12년도 이월) 효과 발생, ’14년도에는 75% 유예 효과 발생하므로, 미디어렙 관련 법제 정비 후 종합검토 필요

3.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(안 제4조)

-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기반조성, 방송통신 연구·개발, 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방통위 의결로 지정

4. 방송통신 표준화(안 제22조)

- 방송통신표준화의 대상을 방송통신 기술·설비 및 기자재·망·서비스 등으로 정함
 -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

5. 방송통신재난의 관리(안 제23조)

-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지상파 텔레비전·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게 부과
 - ※ 기존 통신사업자 : KT, SKT, LGT, SK브로드밴드, KT파워텔 등
 - 신규 방송사업자 : KBS, MBC, SBS, YTN, MBN
- 재난대책본부는 방통위 직원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하고 물자동원, 복구활동 지휘, 재난지역의 방송통신지원 등을 수행함

6. 기타

- 방송통신기술지도(안 제8조),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조항(안 제19조~제22조) 등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서 이관

□ 향후 일정

- 법제처 심사 : '10년 12월 초
- 차관·국무회의 : '10년 12월 중
- 제정안 공포·시행 : '10년 12월 말

『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』 개정안 주요내용

1. 평가항목 및 척도 간소화

- (개정사유)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여 방송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송사업자의 업무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 조정이 필요
- (개정내용)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,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(평가항목 31개→11개, 세부 평가척도 69개→36개)

2. 재허가(승인) 심사항목과의 차별화

- (개정사유) 방송평가와 재허가(승인) 심사의 중복해소를 위해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실적을, 재허가 심사는 사업자 경영현황과 향후 방송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조정이 필요
- (개정내용) <경영의 적정성>과 <자회사 평가결과 활용> 항목은 삭제하고, <재무의 건전성>과 <경영투명성 확보>항목은 간소화하여 단일항목으로 통합

3.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평가방식(정성평가) 도입

- (개정사유) 방송평가가 지나치게 계량적인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어 심도 있는 평가결과의 도출이 어렵다는 지적
- (개정내용) 영역별로 정성평가를 도입,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방법론 개선

〈 방송평가 영역별 정성평가 도입 내용 〉

- | |
|--|
| - 내용영역 : 방송심의규정 위반건수(계량)
+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(일부 정성평가) |
| - 편성영역 : 법정편성비율 위반건수(계량)
+ 방송편성에 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(정성평가) |
| - 운영영역 :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(계량)
+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(정성평가) |

- ※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의 경우,
· 지상파방송 :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등 평가
· SO·위성방송 :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공정거래 등 평가
· 홈쇼핑PP :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공정거래 등 평가

4.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(SO·위성·PP) 또는 강화(지상파TV)

- (개정사유)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지원하는 방송사의 노력 유도 필요
- (개정내용) SO·위성방송의 장애인 시청지원프로그램 신호 누락여부 및 자체채널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함께 평가
 - ※ 지상파TV는 자막방송의 만점기준(50%→70%)을 강화하고, 보도 및 홈쇼핑PP의 경우는 자체채널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

5.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

- (개정사유) 시청자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점검 필요성 대두
- (개정내용)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(관리책임자 지정, 취급방침 공개 등) 및 활동내역(보호조치 내용, 누설금지 및 파기 원칙 준수 등) 등을 종합 평가
 - ※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개정(안)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

6.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에 대한 평가 강화

- (개정사유) 홈쇼핑이 납품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, 홈쇼핑 운영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
- (개정내용)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(250점→300점)하여,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
 - <협력업체 만족도 평가> 항목신설, <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> 기준강화
 - ※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주요내용 : 판매대금 감액 또는 지연지급 여부, 판매장려금 부담 여부,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담여부, 인수 후 분실상품에 대한 책임 전가 등

□ 향후 일정

- '10. 12월초,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
- '10. 12월말,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

〈첨부3〉

『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』 안 주요내용

□ 주요 내용

-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
-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
 - ※ 평일 : 7시~9시, 17시~20시, 주말 및 공휴일 : 7시30분~11시, 14시~20시
- 동·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방송시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
- 재난방송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구 수정
 - ※ ‘방송법 제75조’에서 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’로 변경
- [별표1]의 ‘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’을 ‘제6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’으로 정정

□ 향후 일정

- '10. 12월 초,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
- '10. 12월 말, 위원회 의결, 관보 게재 및 시행